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무원 사망 후 특별승진된 경우
연금 산정시 특별승진 계급 기준으로 산정〉

- 박대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104호)
- 김상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702호)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590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개 요	1
【박대출의원안】	1
【김상욱의원안】	2
【강선영의원안】	3
II. 검토의견	5
1. 개정안의 주요내용	5
2. 검토의견	7

I. 개 요

【박대출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대출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6. 28.

다. 회부연월일 : 2024. 7.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경찰 등 공무원은 각 직군별 소관 법률에 의거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실제 순직 공무원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은 ‘사망 후 추서된 계급’이 아닌 ‘사망 당시 계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름뿐인 예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수행 중 사망한 일반공무원 등이 유족연금 등 지급 시,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 월액을 산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갖추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단서).

【김상욱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상욱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7. 12.

다. 회부연월일 : 2024. 7. 1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로서,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예우가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 경찰관, 소방관이 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순직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단서).

【강선영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선영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8. 6.

다. 회부연월일 : 2024. 8. 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로서,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예우가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일반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경찰관, 소방관이 전사·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단서).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각 개정안은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 또는 순직하여 특별승진된 경우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박대출의원안	김상욱의원안	강선영의원안
제3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제3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제3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제3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이 법에 따른	-----	-----	-----
급여(제43조제1항·제2항에	-----	-----	-----
따른 퇴직연금	-----	-----	-----
· 조기 퇴직 연	-----	-----	-----
금 및 제54조	-----	-----	-----
제1항에 따른	-----	-----	-----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	-----	-----	-----
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	-----	-----
발생한 날이	-----	-----	-----
속하는 달의	-----	-----	-----
기준소득월액을	-----	-----	-----
을 기초로 한	-----	-----	-----

현행	박대출의원안	김상욱의원안	강선영의원안
다. <단서 신설>	--. 다만, 공무원이 사망한 후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 「경찰공무원법」 제19조, 「소방공무원법」 제17조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다만, 「경찰공무원법」 제19조제1항제2호, 「소방공무원법」 제17조(순직한 사람이 특별승진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다만, 공무원이 사망한 후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 「경찰공무원법」 제19조제1항제2호, 「소방공무원법」 제17조(순직한 사람이 특별승진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현행법 제28조는 공무원의 퇴직·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에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비공무상 장해급여 및 퇴직수당을 규정하고 있으며,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과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급여 산정이 이루어지고, 그 밖의 급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급여를 산정함.²⁾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급여) 공무원의 퇴직·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1. 퇴직급여

- 가. 퇴직연금
- 나. 퇴직연금일시금
-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라.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 가. 퇴직유족연금
- 나.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다.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라.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마. 퇴직유족일시금

3. 비공무상 장해급여

- 가. 비공무상 장해연금
- 나.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4. 퇴직수당

2) 「공무원연금법」 제3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② 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초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공무원보수인상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가. 퇴직 3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 나. 퇴직 2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 다. 퇴직 전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현행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이고,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퇴직유족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임.³⁾

각 개정안은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 또는 순직하여 특별승진된 경우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

2. 평균기준소득월액.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고,

현행법 제30조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퇴직유족연금의 경우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이 아닌 공무원의 재직기간 중 보수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급여는 현행법 제28조제2호 중 가목(퇴직유족연금) 및 다목(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⁴⁾을 제외한 퇴직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이 될 것으로 보임.

각 개정안에 따르면,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 또는 순직하여 특별승진된 경우 퇴직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 및 퇴직수당의 급여 수준이 현행 대비 높게 산정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예우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봄.⁵⁾

4) 법 제28조제2호다목에 따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퇴직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지급하는 금전임.

5) 참고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급여는 사망 당시 최종기준소득월액 또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하고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와 병급이 제한되어 유족이 실제로 택하는 급여는 대부분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급여이나, 퇴직수당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급여와 병급 가능하고, 유족별 상황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상 급여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는 바, 「공무원연금법」의 개정 실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재해보상급여는 연금만 선택 가능한 바, 유족이 성년 직전의 자녀인 경우, 고령인 부모 등만 있

<순직 후 특별승진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국 가	일반직	4	1	-	-	4
	경찰직	14	17	18	21	7
	소방직	6	2	3	4	2
지 방	일반직	11	6	9	8	3

주: 일반직은 승진임용일 기준, 경찰·소방은 사망일 기준 통계

자료: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개정안에 따라 특별승진 계급 기준에 따른 봉급월액 증가분을 기준소득월액에 반영할 경우 유족연금일시금 등의 증가분은 특별승진한 계급 및 대상자의 최종 기준소득월액 수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나,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특별승진한 사례를 기준으로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음.

<개정안에 따른 유족연금 등 증가분 사례(예시)>

<예시> 주요가정 : 대상자의 기준소득월액 552만원('24년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특별승진(소방위→소방경)에 따른 봉급월액 증가액('24년 봉급표 기준 평균) : 245,220원 / 재직기간 30년 2월(퇴직수당 재직기간 28년 10월) 가정* * '18~'23년 순직 후 퇴직유족급여를 선택한 공무원 중 직급이 있는 직종 7명의 평균 재직기간 (단위 : 만원)			
급여 종류	현행(A)	개정시(B)	증가분(C)
퇴직유족연금일시금	18,960	19,030	70(0.4%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4,740	4,758	18(0.4% ↑)
퇴직수당	6,207	6,483	276(4.4% ↑)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3항제2호의 “봉급월액이 증가한 월수”를 1로 가정하고 산정			

자료: 인사혁신처

다만, 각 개정안은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려는 공무원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고, 각

는 경우 등 유족의 연금 수령기간이 짧은 경우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선택이 유리

개정안에서 규정하려는 공무원 외에 교육공무원이나 군무원 등이 해당 공무원 임용관계 법령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⁶⁾⁷⁾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 형평성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용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그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문을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봄.⁸⁾

<개정안의 적용 대상>

구분	박대출·강선영의원안	김상욱의원안
적용 대상	「경찰공무원법」 제19조 ⁹⁾ 「소방공무원법」 제17조 ¹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 ¹¹⁾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 ¹²⁾	「경찰공무원법」 제19조제1항제2호 「소방공무원법」 제17조

- 6) 「**교육공무원법**」 제15조(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위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격기준을 갖춘 때에는 제13조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위의 자격증이 없거나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다.

5.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군무원인사법**」 제15조(승진) ② 직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우수 군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을 하거나 일반군무원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특별승진임용) 제46조(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으로서 공무(公務)로 인하여 사망한 일반군무원

- 7) 외무공무원의 경우 참서관급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4),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현재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보다 높은 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는 승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 다만, 특별승격 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아니함.

- 8) 적용 대상의 범위를 일부 공무원으로 한정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종을 특정하여 적용 대상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겠으나, 특별승진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포괄적으로 적용 대상에 포섭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추상적 요건의 형태로 문언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아울러 현행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이 지급받은 과세소득을 토대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¹³⁾ 공무원 사망 후 특별

- 9) 「경찰공무원법」 제19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① 경찰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2.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
 3.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
- 10) 「소방공무원법」 제1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소방공무원으로서 순직한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소방위 이하의소방공무원으로서 모든소방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순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 1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0조 및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 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 12)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8조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 13)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 × (1 + 제4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
 2.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전년도에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로 인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기간(이하 “시간제근무기간”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해당 연도 1월부터 4월까지를 말한다)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 × (1 + 제4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
 2.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의 기초가 된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 × (1 +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계급별 전년도 호봉승급률)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해당 연도에 급여(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하위법령 등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순직 후 특별승진한 공무원의 급여액(퇴직수당) 산정 시 특별승진된 계급을 반영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총 6억 900만원(김상욱의원안 기준 3억 9,500만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¹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퇴직수당):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대상자 수 (A, 명)	순직	22(14)	22(14)	22(14)	22(14)	22(14)	-
	위험직무순직	7(5)	7(5)	7(5)	7(5)	7(5)	-
증가액 (B, 만원)	순직	422(422)	430(430)	439(439)	448(448)	458(458)	-
	위험직무순직	340(340)	347(347)	354(354)	361(361)	366(366)	-
추가재정소요 (=A×B, 백만원)		117(76)	119(77)	122(79)	124(81)	127(82)	609(395)

주: 괄호안의 수치는 김상욱의원안(경찰·소방공무원) 기준 추계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인사혁신처는 추서된 경우 명예적 보상뿐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2.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연봉을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 [(봉급월액이 증가한 월수) ÷ 12]
 3.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연봉을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 ④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매년 1월 25일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14)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안) 비용추계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안) 비용추계서」 및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안) 비용추계서」 참조

적 보상을 확대하여 순직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일 필요성에 공감하나, 적용대상 직종 및 군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상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군인에 대해 동일한 취지로 보상을 확대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743호)이 발의되어 국방위원회에 회부 중에 있음.

문 의 처
02)6788-5342